

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67호

나. 발 의 자 : 박환희 의원 외 33명

다. 제안일자 : 2022년 8월 29일

라. 회부일자 : 2022년 9월 2일

2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가 운영 중인 박물관의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시민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료 기증자에 대한 감사패 수여 등 기증자 예우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자료 기증 및 기증자에 대한 예우 구체화(안 제4조제3항).

4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주우철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박물관의 전시와 연구에 필요한 유물이나 문화재 등 개인이나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료 기증자에 대한 예우규정을 정비하고자 발의되었음.

나. 자료 기증자에 대한 예우(안 제4조제3항)

- 개정안은 시민들이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물 등을 기증할 경우 기증자에 대한 예우로 기증증서를 교부하고, 시장이나 박물관장 명의의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으며, 시장 명의의 감사패는 공적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.

「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현행	개정안
제4조(자료 기증) ① 시장은 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. ② 유상기증은 제3조의 절차를 준용한다. 단, 무상기증은 자료수집실무위원회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. ③ <u>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. 다만,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료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u> <신설>	제4조(자료 기증 및 기증자에 대한 예우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를 교부하고, 시장이나 박물관장(이하 “관장”이라 한다) 명의의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. 다만, 시장 명의의 감사패를 증정할 때에는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 제13조에 따른 공적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u> ④ <u>제3항에 따른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료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u>

- 2022.9. 기준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은 서울역사박물관, 청계천박물관, 서울생활사박물관, 한성백제박물관, 서울우리소리박물관, 서울공예박물관 등 6개소이며, 각 박물관은 현행 조례를 근거로 예산 사정에 따라 기증증서 또는 감사패 증정, 기증사례비 지급을 실시하고 있음.

- 현행 조례는 기증증서와 감사패 증정을 임의규정으로 정하고, 그 증정 주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고 있으며, 개별 박물관의 예산 사정과 자체 방침에 따라 각각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하고 있음(붙임1 최근 3년간(2019~2021) 기증증서 및 감사패 지급 내역).
- 또한 서울역사박물관의 경우 자체방침에 따라 무상기증은 수증여부 결정 후 기증자에게 기증서를 수여하고, 유상기증은 유물가치 평가와 수증여부 결정 후 기증자에게 평가액의 10% 내의 사례비와 기증서를 수여하고 있으며, 감사패는 지급하지 않고 있음.¹⁾

< 최근 3개년 간 서울역사박물관 기증증서 등 발급 현황 >

구 분	2019	2020	2021
기증인원	23명	19명	28명
기증증서	23부	19부	28부
감사패	-	-	-

< 최근 3개년 간 기증사례비 지급 내역 >

(단위 : 천원)

구분	연도	기증자	기증유물	수량	평가액	사례비	비고
서울역사 박물관	2019	한영수 문화재단	5~60년대 서울사진	300건	300,000	25,000	평가액의 8.35%
	2021	임정의	금호동, 독성 등 서울사진	120건	120,000	12,000	평가액의 10%
		황현만	난지도, 마포 등 서울사진	130건	130,000	13,000	평가액의 10%
서울우리 소리박물관	2019	전인평	민요관련 음반	140건	45,000	6,500	평가액의 14.48%
한성백제 박물관	2020	이재열	삼국시대 토기 등	136건	148,050	20,727	평가액의 14%
	2021	박태웅	삼국시대 토기 등	5건	2,100	357	평가액의 17%
서울공예 박물관	-	-	-	-	-	-	지급내역없음

1) 서울역사박물관은 자체방침인 「미래유산의 선제적 확보를 위한 서울유산 수집 및 수증 계획」에서 2021년에는 유상기증계획을 세웠으나(붙임2) 2022년에는 예산부족으로 인해 유상기증계획을 세우지 않았음(붙임3).

- 개정안은 기증증서 교부를 강행규정으로 정하되 감사패에 대해서는 증정 주체를 “시장이나 박물관장”으로 구분하고, 시장이 증정할 경우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른 별도 심의를 거치도록 함.
- 따라서 향후 개정안을 근거로 고액·중요유물 기증자에게 기증증서, 기증사례비와 더불어 시장 표창을 하는 등 차별화된 기증예우책을 제공하는 것은 기증문화를 확산하여 더 방대한 자료기증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기증자에 대한 예우규정 정비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됨.
- 다만, 감사패 증정 주체를 구분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은 집행기관의 재량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개별 박물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규칙 등의 개정을 통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야 할 것임.

붙임1**최근 3년간(2019~2021) 기증증서 및 감사패 지급내역**

○ 서울역사박물관

구 분	2019	2020	2021
기증인원	23명	19명	28명
기증증서	23부	19부	28부
감사패	-	-	-

※청계천박물관, 서울생활사박물관 등 분관 내역없음(본관 통합기증)

○ 서울우리소리박물관

구 분	2019	2020	2021
기증인원	12명	1명	6명
기증증서	12부	1부	6부
감사패	-	-	-

○ 한성백제박물관

구 분	2019	2020	2021
기증인원	1명	2명	5명
기증증서	1부	2부	5부
감사패	1개	1개	5개

○ 서울공예박물관

구 분	2019	2020	2021
기증인원	1명	13명	25명
기증증서	0부	2부	2부
감사패		-	-

붙임2

					시 민
문서번호	유물관리과-79	주무관	유물관리과장	학예연구부장	서울역사박물관장
결재일자	2021. 1. 15.	김재경	代장은혜	박현욱	01/15 배현숙
공개여부	대시민공개				
방침번호		협 조	경영지원부장		임원빈

I · SEOUL · U
너와 나의 서울

2021년 미래유산의 선제적 확보를 위한 서울유산 수집 및 수증 계획



2021. 1.

서울역사박물관
(학예연구부 유물관리과)

사전 검토항목

☞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‘■’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 (※ 비고 :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)

구 분	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	검토 완료	해당 없음	비 고
시 민 참 여	●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청책토론회, 설문조사, 시민공모 등	☐	☒	
전 문 가 자	●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? 예) 자문위원회 개최, 타당성 검토, T/F 운영 등	☐	☒	
갈 등	●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,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	☐	☒	
사 회 약 배	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여성, 아동, 장애인, 한부모 가정 등	☐	☒	
일 자 리	●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직·간접 채용, 취업알선, 전문인력양성, 창업지원 등	☐	☒	
선 거 법	●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? 예) 홍보물 배포, 표창수여, 경품지급, 기부행위 등	☐	☒	
안 전	●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장소·시설물 점검,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	☐	☒	
타 기 관	● 타 기관 협의·협력(타 자원 활용 등)을 하였습니까? 예) 중앙부처, 타 지자체, 투자·출연기관, 민간단체 등	☐	☒	
홍 보	●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보도자료, 기자 설명회, 현장 설명회 등	☐	☒	
정 책 영 문 화	●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영문 제목·요약, 해외 언론 보도, 외국어 홈페이지 등	☐	☒	
바 른 우 리 말	●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? 예) 별첨, 첨부 ⇒ 붙임, 가이드라인 ⇒ 지침 등	☒	☐	
결 재 문 서 공 개	● 공개 여부를 “비공개”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~제8호	☐	☒	

2021년 미래유산의 선제적 확보를 위한 서울유산 수집 및 수증 계획

시민소장자료 기부 홍보를 통한 시민의 자발적인 기증과 현장의 자체 기획 수집을 통해 서울의 역사, 문화적 또는 생활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우수한 서울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자 함

I

추진근거

-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조례 제4조(자료 기증)
-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(자료기증)
- 서울역사박물관 제5차 유물수집 중장기 계획(유물관리과-2736, '20.12.22.)

II

사업개요

- 사업내용 : 시민들의 기증 및 현장 자체 수집을 통한 적극적인 서울유산 확보
- 수집대상 : 서울의 역사·문화와 관련된 자료 수증, 수집
- 사업기간 : 2021. 1 ~ 12
- 수집목표 : 기 증 : 1,500건 / 수 집 : 500건
 - ※ '19년 실적
 - 기 증 : 총 19명 / 3,138건 108,698점
 - 자체수집 : 총 9회 / 136건 543점
- 소요예산 : 103,500천원

작성자

학예연구부장: 박현욱 ☎724-038 유물관리과장: 홍승주 ☎0155 담당:김재경 ☎0160

Ⅲ

추진방향

- 서울의 장소, 역사와 기억에 대한 체계적이고 관련성 높은 유물 수집
- 사전준비에 의한 적극적·능동적인 ‘기획 수집’ 방법 추진
- 도시 성장 및 개발, 도시민 생활 변화 등에 대한 자료 자체 수집
- 수집 범위 확대 및 미래유산, 서울 기억상자 등 수집 방식 다변화

Ⅳ

세부추진계획

□ 수집대상

- 서울의 역사, 문화와 관련된 자료로 전시 및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
- 해방 이후, 특히 1960년대 이후 서울반세기 도시성장사 관련자료
- 미래 서울유산이 될 수 있는 현재의 주요 사업·행사, 인물 등 관련자료
- 생활문화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도시성장사 관련자료 적극 확보
- 당대 서울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자료

수집기준

- ◆ 미래에 도시서울의 역사, 문화의 증거가 될 만한 사료적 가치가 있는 자료
- ◆ 별도로 관리되지 않으면 훼손·멸실이 우려되는 서울관련 자료
- ◆ 서울에 대한 기록정보의 희소성·유일성·상징성이 있어 보존가치가 상당한 자료

□ 수집방법

① 기증활성화를 통한 시민 소장자료의 적극적인 확보

- 생활문화조사 등과 연계, 박물관 자체 기획수집 및 시민 제보, 기증
- 홈페이지, SNS 등 시·박물관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
 - 시민들이 기증절차에 관한 안내·문의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

○ 차별화된 기증예우책을 통한 2차 기증 유도

- 기증성과에 대한 기획보도를 통한 2차 기증유도 활성화
- 로비 동판 명패부착, 감사패 증정 등 ‘기증자 명패 제막식’ 개최
- 기증 명예의 전당을 통해 기증자 및 기증내역 홈페이지 공개
- 고액·중요유물 기증자에 대해서는 시장 표창 상신 등 다양한 기증자 예우 추진

○ 기증 활성화를 위해 유상기증 제도 적극 활용

② 현재 서울의 모습을 보여주는 미래유산의 확보

- 집회, 행사 축제, 재개발과 같은 수집 계기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
- 관계부서, 자치구 등의 협조를 통하여 이관·관리전환 등 체계적으로 수집
- 도시재개발·도시정비사업 등의 관련자료는 조사연구사업과 병행하여 우선확보

③ 서울 관련 자료의 중점확보를 위한 가칭‘서울 기억상자’ 구축

- 당대 서울 도시 및 사회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자료 선별, 수집
 -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집대상 및 아이템 선정
 - 자체수집, 기증, 현지구입 등의 방법을 통해 대상자료 수집
- 연도별 ‘기억상자’를 구성, 미래의 타임캡슐로 만들어 2-30년 후 개봉

□ 수증 및 수집절차

① 기증

- 무상기증 : 수시 추진

연번	절 차	세 부 내 용
1	기증신청 접수	- 기증유물 신청 접수
2	신청유물 심의	- 유물수집실무위원회 · 기증신청유물 수증여부 심의(서류심사)
3	기증유물 인수	- 기증유물 실물 인수, 기증서 수여

○ 유상기증 : 매년 1회 정기 운영

연번	절 차	세 부 내 용
1	기증 대상유물 조사	- 유물수집계획에 따라 기증 대상유물 조사
2	기증 대상유물 선정	- 유물수집실무위원회 · 서류 심사와 평가대상유물 선정
3	실물 접수	- 평가대상유물 실물 접수
4	유물 평가	- 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 (전문가 3인 이상 구성) · 실물접수유물 진위여부, 가치판단, 가격 평가
5	최종 심의	- 박물관운영위원회 · 최종 심의 및 의결
6	사례비 지급	- 기증자 사례비 지급 및 기증서 수여

② 자체수집

○ 근현대서울유산 : 서울의 미래유산을 대상으로 수시 추진

연번	절 차	세 부 내 용
1	대상자료 정보 수집	- 도시성장, 개발, 시민의 생활문화와 관련 자료 - 해당 내용에 대한 공무원, 시민, 단체의 제보 등
2	담당자 현장 조사	-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
3	자체수집 여부 결정	- 수집대상 자료 가치판단, 수집여부 결정
4	협의 및 수집	- 자료 소장자와 협의 및 수집

③ 서울 기억상자

연번	절 차	세 부 내 용
1	연도별 지표 자료 선정	- 당해 연도에 발행되는 서울지도, 달력, 핸드폰 등 - 당해 연도에 이슈가 된 행사, 사진, 주목된 인물 자료
2	전문가 자문회의	-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연도별 지표자료 및 아이템 확정
3	구입 및 수집	- 자체수집, 기증, 현지구입 등의 방법을 통해 대상자료 수집
4	연도별 기억상자 보관	- 미래의 타임캡슐로 만들어 20~30년 후 개봉

V

소요예산 및 집행방법

○ 소요예산 : 103,500천원

(단위 : 천원)

예산과목		상세내역	예산액
세부사업	통계목		
유물기증사례	사무관리비	기증증서 및 명패제작, 기증유물목록 발간	28,000
		기증유물 복원, 복제, 환치비	12,000
		수집품 정리, 운송비 및 포장비	19,000
		유물 평가위원회 수당	1,800
	행사운영비	명패제막식 행사 비용	2,700
	기증사례비	유상 기증유물 사례비용	25,000
근현대 서울유산수집	사무관리비	수집품 운송비, 포장비 등	15,000
총 계			103,500

○ 예산집행방법

- 기증유물목록 발간 / 수집품운송비 등 : 소액수의계약
- 평가위원 수당 / 기증사례비지급 : 일반지출(입금의뢰서에 의한 계좌입금)
- 기타 일상경비집행 : 1,000만원 이하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신용카드 결제, 지로 입금, 계좌입금

VI

향후 계획

- ☐ 2021. 1~5. 2020년 수집유물 유형별/종류별 정리
- ☐ 2021. 6. 2020년 기증자 명패 제막식 개최
- ☐ 2021. 7. 상반기 기증유물 및 근현대유산 수집 결과보고
- ☐ 2021. 12. 하반기 기증유물 및 근현대유산 수집 결과보고

붙임3

붙임3

		시 민			
문서번호	유물관리과-153	주무관	유물관리과장	학예연구부장	서울역사박물관장
결재일자	2022. 1. 18.	김재경	강성희	박현욱	01/18 김용석
공개여부	대시민공개	경영지원부장			장화영
방침번호		총무과장			김춘섭

다시 쓰는
공정도시
서울

2022년 미래유산의 선제적 확보를 위한 서울유산 수집 및 수증계획



2022. 1.

사전 검토항목

☞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‘■’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 (※ 비고 :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)

구 분	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	검토 완료	해당 없음	비 고
시 민 참 여	●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청책토론회, 설문조사, 시민공모 등	☐	☒	
전 문 가 자	●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? 예) 자문위원회 개최, 타당성 검토, T/F 운영 등	☐	☒	
갈 등	●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,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	☐	☒	
사 회 적 약 배 려	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여성, 아동, 장애인, 한부모 가정 등	☐	☒	
일 자 리	●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직·간접 채용, 취업알선, 전문인력양성, 창업지원 등	☐	☒	
선 거 법	●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? 예) 홍보물 배포, 표창수여, 경품지급, 기부행위 등	☐	☒	
안 전	●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장소·시설물 점검,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	☐	☒	
타 기 관	● 타 기관 협의·협력(타 자원 활용 등)을 하였습니까? 예) 중앙부처, 타 지자체, 투자·출연기관, 민간단체 등	☐	☒	
홍 보	●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보도자료, 기자 설명회, 현장 설명회 등	☐	☒	
정 책 영 문 화	●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영문 제목·요약, 해외 언론 보도, 외국어 홈페이지 등	☐	☒	
바 른 우 리 말	●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? 예) 별첨, 첨부 ⇒ 붙임, 가이드라인 ⇒ 지침 등	☒	☐	
결 재 문 서 공 개	● 공개 여부를 “비공개”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~제8호	☐	☒	

2022년 미래유산의 선제적 확보를 위한 서울유산 수집 및 수증 계획

시민소장자료 기부 홍보를 통한 시민의 자발적인 기증과 현장의 자체 기획 수집 및 서울의 기억상자를 통해 서울의 역사, 문화적 또는 생활사적으로 가치 있는 우수한 서울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자 함

I

추진근거

-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조례 제4조(자료 기증)
-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(자료기증)
- 서울역사박물관 제5차 유물수집 중장기 계획(유물관리과-2736, '20.12.22.)

II

사업개요

- 사업내용 : 시민들의 기증 및 현장 자체 수집을 통한 적극적인 서울 유산 확보
- 수집대상 : 서울의 역사·문화와 관련된 자료 수증, 수집
- 사업기간 : 2022. 1 ~ 12
- 수집목표 : 총 2,000건 (기증 : 1,500건 / 수집 : 500건)
 - ※ 2021년 실적
 - 기 증 : 총 28명 / 2,148건 6,351점
 - 자체수집
 - 근현대유산 : 총 9회 / 271건 1,232점
 - 서울의 기억상자 : 서울지도 등 62건 65점
- 소요예산 : 78,500천원

작성자

학예연구부장: 박현욱 ☎724-038 유물관리과장: 강성희 ☎0155 담당:김재경 ☎0160

Ⅲ

추진방향

- 서울의 장소, 역사와 기억에 대한 체계적이고 관련성 높은 유물 수집
- 사전준비에 의한 적극적·능동적인 ‘기획 수집’ 방법 추진
- 도시 성장 및 개발, 도시민 생활 변화 등에 대한 자료 자체 수집
- 수집 범위 확대 및 미래유산, 서울 기억상자 등 수집 방식 다변화

Ⅳ

세부추진계획

□ 수집대상

- 서울의 역사, 문화와 관련된 자료로 전시 및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
- 해방 이후, 특히 1960년대 이후 서울반세기 도시성장사 관련자료
- 미래 서울유산이 될 수 있는 현재의 주요 사업·행사, 인물 등 관련자료
- 생활문화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도시성장사 관련자료 적극 확보
- 당대 서울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자료

수집기준

- ❖ 미래에 도시서울의 역사, 문화의 증거가 될 만한 사료적 가치가 있는 자료
- ❖ 별도로 관리되지 않으면 훼손·멸실이 우려되는 서울관련 자료
- ❖ 서울에 대한 기록정보의 희소성·유일성·상징성이 있어 보존가치가 상당한 자료

□ 수집방법

① 기증활성화를 통한 시민 소장자료의 적극적인 확보

- 기획전시, 생활문화조사 등과 연계하여 박물관 자체 기획수집
- 홈페이지, SNS 등 시·박물관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기증 확대
 - 시민들이 기증절차에 관한 안내·문의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

○ 차별화된 기증예우책을 통한 2차 기증 유도

- 기증성과에 대한 기획보도를 통한 2차 기증유도 활성화
- 로비 동판 명패부착, 감사패 증정 등 ‘기증자 명패 제막식’ 개최
- 기증 명예의 전당을 통해 기증자 및 기증내역 홈페이지 공개
- 고액·중요유물 기증자에 대해서는 시장 표창 상신 등 다양한 기증자 예우 추진

② 현재 서울의 모습을 보여주는 미래유산의 확보

- 집회, 행사 축제, 재개발과 같은 수집 계기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
- 관계부서, 자치구 등의 협조를 통하여 이관·관리전환 등 체계적으로 수집
- 도시재개발·도시정비사업 등의 관련자료는 조사연구사업과 병행하여 우선확보

③ 서울 관련 자료의 중점확보를 위한 ‘서울 기억상자’ 구축

- 당대 서울 도시 및 사회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자료 선별, 수집
 -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집대상 및 아이템 선정
 - 자체수집, 기증, 현지구입 등의 방법을 통해 대상자료 수집
- 연도별 ‘기억상자’를 구성, 미래의 타임캡슐로 만들어 2-30년 후 개봉

□ 수증 및 수집절차

① 기증

- 무상기증 : 수시 추진

연번	절 차	세 부 내 용
1	기증신청 접수	- 기증유물 신청 접수
2	신청유물 심의	- 유물수집실무위원회 · 기증신청유물 수증여부 심의(서류심사)
3	기증유물 인수	- 기증유물 실물 인수, 기증서 수여

② 자체수집

○ 근현대서울유산 : 서울의 미래유산을 대상으로 수시 추진

연번	절 차	세 부 내 용
1	대상자료 정보 수집	- 도시성장, 개발, 시민의 생활문화와 관련 자료 - 해당 내용에 대한 공무원, 시민, 단체의 제보 등
2	담당자 현장 조사	-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
3	자체수집 여부 결정	- 수집대상 자료 가치판단, 수집여부 결정
4	협의 및 수집	- 자료 소장자와 협의 및 수집

③ 서울 기억상자

연번	절 차	세 부 내 용
1	연도별 지표 자료 선정	- 당해 연도에 발행되는 서울지도, 달력, 핸드폰 등 - 당해 연도에 이슈가 된 행사, 사진, 주목된 인물 자료
2	전문가 자문회의	-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연도별 지표자료 및 아이템 확정
3	구입 및 수집	- 자체수집, 기증, 현지구입 등의 방법을 통해 대상자료 수집
4	연도별 기억상자 보관	- 미래의 타임캡슐로 만들어 20~30년 후 개봉

V

소요예산 및 집행방법

○ 소요예산 : 78,500천원

(단위 : 천원)

예산과목		상세내역	예 산 액
세부사업	통계목		
유물기증사례	사무관리비	기증증서 및 명패제작, 기증유물목록 발간	28,000
		기증유물 정리, 운송비 및 포장비	19,000
		기증유물 복원, 복제, 환치비	12,000
		유물 평가위원회 수당	1,800
	행사운영비	명패제막식 행사 비용	2,700
근현대 서울유산수집	사무관리비	수집품 운송비, 포장비 등	15,000
총 계			78,500

○ 예산집행방법

- 기증유물목록 발간 / 수집품운송비 등 : 소액수의계약
- 평가위원 수당 / 기증사례비지급 : 일반지출(입금의뢰서에 의한 계좌입금)
- 기타 일상경비집행 : 1,000만원 이하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신용카드 결제,
지로 입금, 계좌입금

VI

향 후 계 획

- ☐ 2022. 1~5. 2021년 수집유물 유형별/종류별 정리
- ☐ 2022. 6. 2021년 기증자 명패 제막식 개최
- ☐ 2022. 7. 상반기 기증유물 및 근현대유산 수집 결과보고
- ☐ 2022. 12. 하반기 기증유물 및 근현대유산 수집 결과보고

끝.

의안번호
67

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	제 안 자	제안일자	소관 상임위		
	박환희 의원(대표발의)	2022.8.29.	문화체육관광위원회		
주요내용	○ 시립박물관의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 등 자료기증자에 대한 감사패 수여 등 기증자 예우 규정을 정비함.(안 제4조제3항)				
추진경과	○ 2022. 8.29. 일부개정조례안 발의(박환희 의원 외 33명)				
부 서 검 토 의 건	원안가결(○) / 수정가결 () / 부결() / 보류()				
쟁점사항 (의회동향, 문제점 등)	○ 시민 기증을 활성화하고 기증자 예우를 강화하는 입법 취지로,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시행에 문제가 없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함				
대응방안	○				
상 임 위 처 리 결 과	○ 상임위 안전처리 후 작성(원안가결, 수정가결, 부결, 보류, 미상정으로 구분) - 수정가결시 수정내용, 부결·보류·미상정시 사유 기재				
향후계획	○ '22.10. :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조례 시행				
담당부서	박물관과	팀장	김득삼(☎2133-4183)	담당	조서영(☎2133-4185)